

KISO

2016 Vol.24 *Journal*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 장철준
000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 김학웅

기획동향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 이정념

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 박아란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 김윤명

국내외 주요소식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 염흥열

이용자 섹션

구글 국내지도 국외반출 요청 이슈와 정책 시사점 / 채반석

문화시평

<도서> 평화로운 기술 : 미담 그리고 미화 / 김예란

KISO NEWS

공정거래위원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간담회 개최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장철준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Keyword>

공인, 허위사실, 현실적 악의 법리, 입증책임

1. 심의결정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5-1]은 모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 “근거 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모 사립대학 총장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인 당해 포털은 게시물 내용에 신고인과 공직자인 신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비평적 내용이 있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소명되었거나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2016년 5월 23일에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신고인에게 전달하였다.¹⁾ 이를 접수한 신고인이 2차 소명 내용과 함께 2차 신고를 해오면서, 본 심의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사립대학 총장인 신고인과 고위 공직자인 배우자가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블로그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인신공격인지, 셋째, 글 내용 중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 부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이 KISO 정책규정상 임시조치의 근거가 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소명”에 해당되는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1) 문제가 된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인 배우자의 직무상 책임 하에 있었던 2014년 9월의 사망사고(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음)를 적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그가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던 이유를 대학 총장인 신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더하여, 신고인 배우자가 정치권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신고인 배우자에게서 “전두환이 자꾸 연상된다.” “이 자가 정치를 하려 든다면, 그의 배우자 ○○○총장의 악행은 더 악랄해질 것이며” 등과 같은 언사도 동원되었다.

2) 이 사건의 해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요 KISO 정책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나. 심의결정 주요 내용

KISO는 게시글에 대해 심의 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하였다. 소위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신고인과 배우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임시조치의 인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표현으로서, 신고인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므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신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들을 임시조치 등 처리가 제한되는 대상인 ‘공인’으로 보는 데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즉, 신고인의 배우자는 공직자임이 분명하고, 사립대학 총장인 신고인 또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준하는 공인으로 보았다. 다만 심의위원 중에서는 사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신고인의 지위를 공인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대학 총장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이나 언론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의 게시물이 신고인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의견과 부정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전자의 의견에 의하면, 게시글의 내용이 신고인의 공적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닌 사적 공격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후자의 의견에 의하면, 공직자의 지휘 책임 범위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추궁된 책임이 경미하였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그 원인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립대학 총장인 배우자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은, 일반 시민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결정적 이유는 게시글을 명백히 허위 사실로 소명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게시글의 일부 내용이 게시자의 직접적인 경험증거나 입증 가능한 간접증거 없이 추측과 소문에 의한 의혹 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록 이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유익성도 찾을 수 있지만 추측과 풍문에 근거한 추측적 주장은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진실이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렇듯 게시물을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로 보는 이상 이는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소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심의결정 평석

가. 공인의 지위

사립대학 총장인 신고인이 정책규정상의 공

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정책규정 제5조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라 하여 공인의 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은, 정책규정에서 표현의 자유 법리인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론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대목이다. 물론 우리의 헌법 이론과 판례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에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적 인물 이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 인물이 관련된 공적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는 확립되어 있다.³⁾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관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 총장으로서의 객관적 지위 만으로도 공인으로 볼 여지는 크지만 사안 자체의 표현 내용에서도 정치권력과의 연계성 등 대중의 공적 관심을 다루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의결정과 같이 신고인을 공적 인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 게시물의 악의성과 상당성 상실의 현저함

정책규정 제5조상 공인에게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에 대한

표현에 이러한 악의성과 비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명예훼손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⁴⁾ 앞서 언급하였던 미국의 공적 인물 이론상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본격적으로 규범화 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수많은 표현의 현장에서 이 법리는 현실적으로 큰 유용성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순히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에 좀 더 강한 정도의 악의적 표현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허위성과 악의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⁵⁾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근거 없는 과도한 추측과 신청인의 비리에 관한 주장을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맞서 있다.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악의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⁶⁾ 자신의 악의성을 순진하게 밖으로 드러낸 표현이 아닌 이상, 외부에 표시된 부분만을 가지고 표현자의 내부적 악의까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표시된 사실의 객관적 허위 여부를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왜곡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

3)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구분된 헌법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재 1999.6.24. 선고 97헌마265 참조.
 4) KISO 정책규정 해설서에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설정한 게시물 처리정책의 요체이며 정수”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 해설서」, 2015, 30쪽.
 5)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2008), 249쪽 참조. 물론 이 법리가 등장하였던 뉴욕타임즈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언론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오보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통해 언론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공익 언론의 역할을 ‘언론사’만 전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인의 공익적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같은 이유로 심의위원의 악의성 판단에 함부로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준으로부터 악의성을 추론해 내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 추측에 근거한 주장과 “명백한 허위사실 소명”

이렇게 되면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 여부야말로 임시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심의결정은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직접적인 경험증거나 입증 가능한 간접증거 없는” 추측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⁷⁾ “게시자의 추측 또는 세간의 풍문에 근거한 추측적 주장을 담고 있어서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특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강한 단언을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역시 허위사실 소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심의결정은 표현 내용이 표시자의 순수한 의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선부른 추측에 의한 것일 때는 소문이나 추측 내용의 허위성을 판별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임시조치를 내리겠다는 심의위원회의 의도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는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그 근거로 제시한 논리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위 결정은 추측 또는 풍문에 근거한 추측

적 주장이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더욱이 그러한 추측을 강한 언사로 표현하는 경우는 진실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위라는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추측 그 자체로부터 게시글의 허위성이 자연스럽게 소명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실 입증이 어려운 추측이면 그것에 곧바로 허위라는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추측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만 있으면 별도의 소명 노력 없이도 허위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제1호야말로 앞서 언급된 공적 인물 이론의 현실적 악의 법리가 KISO의 자율규제 단계에서 명백하게 정착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표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표현 행위자가 아닌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⁸⁾ 명백한 허위사실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신청인’이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규정은 제출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그 허위 주장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 악의 법리에 의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 즉 소명의 담당을 신고인에게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법부에서 취하여 오던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소송의 입증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흐름에 자율정책기구가 의도적으로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도의 규

7)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21 판결. 대법원은 언론보도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도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추측 내용의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라는 뜻이다.

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 해설서」, 2015, 34쪽. 해설서에 의하면 그 동안의 심의사례에서는 공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닌 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관건은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신고인에 의해서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신고인이 명백한 허위사실의 소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고인은 제출한 소명서에서 총 세 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게시글에서 주장된 의혹과 추측에 대한 사항을 회원사 포털에서도 동의하는지, 그러한 추측이 진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되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결정에서는 의혹과 추측이 객관적 진실이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의 소명으로도 충분히 허위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한 듯하다.⁹⁾ 그러나 현실적 악의 법리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입증책임 문제에 좀 더 강조점을 둘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임시조치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3. 나오며

온라인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통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소통의 편리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격권 침해로 대표되는 명예훼손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을 완충지대에서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정책기구의 판단은 이름 그대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정책규정 내용에 대해 해석적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적 적용 방안을 찾는 일 또한 기구에 부여된 정당한 책무일 것이다.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은 그 동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법실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과감히 수용한 역사적 규정이라 생각한다. 이 규정의 취지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해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KISO JOURNAL

9) 지금까지의 다른 임시조치 심의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백한 소명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소명자료를 요구해온 점을 들어 이 사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른 심의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에서는 게시글의 악의성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점을 임시조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OOO 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김학웅 /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

<Keyword>
공인, public figure, 공적관심사, 자동완성검색어, 심의결정

1. [2016심7-1] 심의결정의 개요

나.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의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시연하였다. 그러자 일각에서 이러한 시연을 비판하면서 신청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연한 진단이 오진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에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오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¹⁰⁾를 근거로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검색어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도 일반 공중의 관심 속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본 사안과 관련된 정책 이슈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10)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

관련 단체의 협회장인 신청인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수행된 해당 시연에 관한 논란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며, 셋째, 이 사건 검색어가 노출되었을 때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논쟁은 최근까지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검색결과를 통해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오진 논란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시연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자칫 신청인이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진을 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위와 같이,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본 결정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해당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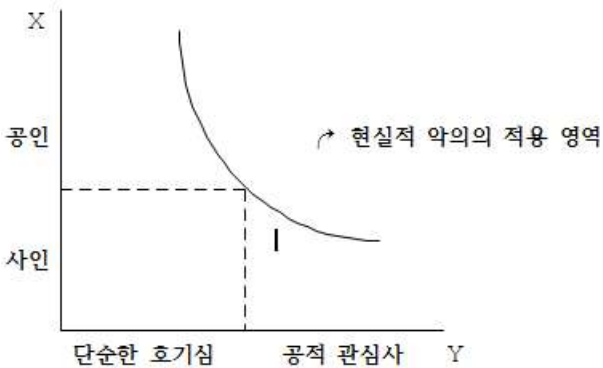
가. 공인인지 여부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이 아님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인성이 명백히 부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 범위로서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와 더불어 <주관적 범위로서 공인(Public Figure)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는 공직자(Public Officer) 이외에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의 범주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공적 관심사의 전제로서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는데¹¹⁾ 미국의 경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이래 미연방대법원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적용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¹²⁾ 그 이후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1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공적 관심사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중략)…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12) 논쟁의 핵심은 그 표현된 내용이 공공 이익(public interest) 또는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인지 여부로 정하는 내용기준 접근방식(content-based approach)과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신분기준 접근방식(status-based approach)에서 나타났는데 이 논의의 이면에는 비교형량 방법(balancing)과 유형별 접근방법(categorical approach)의 장단점 비교가 자리잡고 있다. 공공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안별로 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 반면 신분을 기준으로 하면 유형화가 쉬워지기 때문이다(문재완,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p. 94 ~ 95 및 97)

Builder, Inc., 472 (1985)를 거치면서 미연방대 법원의 정리한 공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공무원(public official), ②전면적인 공적 인물(“general” or “all purpose” or “pervasive” or “unlimited” public figure), ③논쟁사안의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 또는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 ④타의에 의한 공적 인물 또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involuntary public figure)¹³⁾이다. 그런데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는 양자가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독립변수로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인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공인의 범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결로는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범죄행위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우수 방송사의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은 공무원의 공적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우수 방송사의 차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방송됨이 상당하고, 이러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없다.>¹⁴⁾와 <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그 활동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위에 있다.>¹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신청인은 비록 정무직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익단체의 대표자이고, 관련 사안이 국민보건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며,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13)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업무의 실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이 있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책임 또는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를 말한다. 경찰관 등 법집행기관종사자, 선출직 공무원은 언제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사법부 및 입법부 직원, 군인 등 군 종사자 등은 그들이 어느 정도 정책결정의 권한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립 또는 주립학교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공무원 외에도 공공의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공무원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인 뉴스가치가 있는 지위에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전면적 공적 인물과, 그와 달리 특정한 공적 논쟁(public controversy)에 있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으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만 공적 인물로 취급되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 있으며,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민사소송의 피고 등 종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공공의 관심을 받게 된 자로서 그러한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없어 공공에의 지향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이 있는데, 아무리 뉴스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물에 대하여는 뉴욕 타임즈 룰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한 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란의 추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제한적 공적 인물이 될 수 있다.(이광범, 미국의 명예훼손법, 언론법연구(2009), 사법연수원, p. 206 ~ 208. 같은 내용으로는 윤재운.함석천, 언론분쟁과 법, 청림출판, 2005, p. 61 ~ 62.)
“vortex” or “limited” public figure와 involuntary public figure의 구별에 관해서는 Time, Inc. v. Firestone. 1976 (김옥조, 미디어법(2012년 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 429.) 참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자발적으로 시연하였다면, 최소한 제한적 공인이라도 인정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나. 검색어와 검색결과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검색결과로서의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검색어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위원들의 치열한 토론과정이었는는데, 검색어가 검색결과로의 traffic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종이신문의 제목 또는 부제(副題, subtitle)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 우리 법원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한다.>¹⁵⁾ 라고 판시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갑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을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갑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위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

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갑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¹⁷⁾ 라고 판시한 점과 검색어가 일종의 광고로서(Search Ad)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인터넷광고심사지침)은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단, 배너광고, 팝업·팝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색어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판결
16)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17)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3. 맺으며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과 공적관심사란 개념은 상호 작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예컨대, 평범한 사람이라도 공적 관심사인 논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 경우 제한적 공인으로 position이 옮겨질 수 있다.) 양자를 단절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고, 검색어가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로 진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리를 정교화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만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는 검색어를 일종의 publishing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되면서도, 그 책임을 지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입장(유럽의 경우)과 표현의 자유로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미국의 경우)으로 상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유럽과 미국이 책임을 물을 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유럽과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즉, 유럽과 미국의 현실이 상반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유럽과도 다르고 미국과도 다른 우리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고 규범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일 듯 하다. 그러한 고민을 제공했다는 면만으로도 이번 심의결정은 자못 의미가 있다.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이정념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법학박사

<Keyword>

온라인 혐오발언, 유럽연합, 소셜미디어, KISO 정책규정

1. 인터넷을 매개로 한 혐오발언¹⁾

인터넷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지니는 의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표현된 의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부분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Hate Speech)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혐오발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반한 -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과소평가나 비방으로 이어지는 - 혐오의 언어적 인상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의사를 언어의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웠고 앞으로 이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이미 혐오발언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혐오발언이 과거에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혐오발언 또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까닭에, 현실적으로 발생된 피해는 결국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는 의사표현의 권리는 생각 내지 사

1) 해당 내용은 이정념, 온라인 혐오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권, 2016, 37-56면의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고, 양심, 종교의 자유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 함께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는 또는 재인식되어야 하는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2. 유럽연합과 IT 회사들 간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을 위한 행동기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다양한 매체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혐오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5년 10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관용과 존중: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혐오와 반이슬람 혐오의 예방 및 해결(Tolerance and respect: preventing and combating Antisemitic and anti-Muslim hatred in Europe)’을 위한 콜로키움에서, 유럽위원회는 폭력과 혐오를 유포하는 불법적인 온라인 혐오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협력 하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²⁾, 트위터 및 유튜브(이하 IT 회사들)와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테러공격과 테러 가해집단이 젊은 계층을 선동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유럽에서 긴급한 현안이다. 유럽위원회는 2015년 12월 유럽연합 인터넷 포럼(EU Internet Forum)을 창설하여 테러집단들이 온라인상에서 테러를 지시하고 선동하는 행위들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과 IT 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불법적 혐오발언들이 피해대상인 개인 또는 집단에게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

는 것이 아니라 자유, 관용 그리고 비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정의, 소비자, 성평등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EU Commissioner for Justice, Consumers and Gender Equality)’ 베라 조로바(Věra Jourová)는 최근 테러공격들은 불법적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셜미디어는 테러 가해집단들이 폭력과 혐오를 퍼뜨리기 위하여 젊은 세대와 인종주의자들을 과격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도구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라 조로바(Věra Jourová)는 세계의 IT 회사들이 불법적 혐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내에 해당 발언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필요하다면 특정 내용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통지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트위터의 유럽을 위한 공공정책 책임자(Twitter’s Head of Public Policy for Europe)’인 카렌 화이트(Karen White)는 혐오적인 행위는 트위터 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과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정책관리 책임자(Head of Global Policy Management at Facebook)인 모니카 빅커트(Monika Bickert)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는 혐오발언을 위한 어떠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소비자 서비스(Microsoft-hosted consumer services)는 폭력과 혐오발언의 조장행위를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관련 정책들을 표할 것이라고 하였다.³⁾

이러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2016

2)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서비스들을 총칭함.

3)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년 5월 31일 유럽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IT 회사들은 불법적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무들을 포함하는 ‘온라인상 불법적 혐오발언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기준(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이하 행동기준)’을 마련하였다.⁴⁾ 행동기준에 따라 IT 회사들은 유럽연합과 유럽회원국을 원조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혐오발언이 유포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불어 다른 소셜미디어들과 공동책임을 가지고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하고자 한다.

해당 행동지침을 바탕으로 IT 회사들이 불법적 혐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내에 해당 발언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필요하다면 특정 내용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통지장치를 갖추기 위해 내부 절차는 물론 직원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게 된다. IT 회사들과 유럽위원회는 독자적인 대응계획,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 등을 수립하고 (혐오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그들의 과업을 수행한다. IT 회사들은 행동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인터넷 회사들과 매체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회사들(Social Media Companies)과 협력을 강화하여 최선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한편, 자신들의 활동을 안내하고자 하는 점을 목표를 정하고 있다.

특히 행동지침을 통해 IT 회사들은 불법적

혐오발언과 관련한 통지들(Notifications)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절차들을 마련함으로써, 혐오발언이 삭제되고 필요하다면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T 회사들은 폭력과 혐오의 실행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 또는 공동체 가이드라인(Community Guideline)을 마련하여야 한다. IT 회사들은 해당 규정과 공동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유형들에 대해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T 회사들은 회원국 담당자와 IT 회사들 사이에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통지의 획득절차에 관한 - 특히 불법적인 혐오발언의 실행차단 또는 제거에 관한 통지에 관한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IT 회사들과 회원국 사이에서 구축한 내부연락망을 통해 전달되고, 이는 회원국들 특히 그들의 사법기관이 온라인상 불법적 혐오발언을 용인하는 매체들을 인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IT 회사들은 질 높은 통지를 위해 시민사회기구 협력자들(Civil Society Organization Partners)의 대표 네트워크 및 모든 회원국 내에 ‘신뢰된 보고자들(Trusted Reporters)’과의 협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의 원조를 받게 된다. IT 회사들은 최근의 사회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유럽위원회와 IT 회사들은 행동지침의 수행에 관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말까지 이에 관한 예비적 평가를 진행한다.

illegal online hate speech, 31 May 2016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최종확인: 2016년 9월 10일).

4) 이하에서 설명하는 행동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31 May 2016 참조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최종확인: 2016년 9월 10일).

3. 온라인 혐오발언과 관련된 피해방지 노력: KISO 정책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정책규정(이하 KISO 정책규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⁵⁾ KISO 정책규정은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제1조).

특히 KISO 정책규정 제5장은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제20조). KISO 정책규정은 예외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저해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정책규정 제21조는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

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KISO 정책규정이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을 명시하면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이것이 사회갈등을 초래하더라도 무조건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점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에 있어 이용자 간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인터넷을 통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 내지 혐오적 표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발생 가능한 혐오발언의 피해에 대처하고자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혐오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



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2014)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kiso.or.kr/정책위원회/정책규정> (최종확인: 2016년 9월 10일)

기는 하지만 피해 대상이나 대상군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정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감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 차별적 표현을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한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차별적 표현이라고 인정되는 내용들의 삭제제를 위해 누가 해당 권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유럽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혐오 발언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발언의 규율은 유효한 법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혐오발언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유포되고 있음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미디어와 같이 의사소통의 장이 되는 매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유포되고 있는 혐오발언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통지시스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IT 회사들 사이에 마련된 행동기준은 서로의 협력을 통

해 통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발언을 저지하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다만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을 위한 통지시스템은 특정 의사표현이 혐오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입증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유럽연합과 IT 회사들이 행동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한국형 ‘통지-입증 시스템’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이정념(2016), 온라인 혐오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제153권, 37-56면.

이정념(2015),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제13권 제1호, 165-187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2014). Available. <http://www.kiso.or.kr/정책위원회/정책규정>

European Commission(2016),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31 May 2016. Availabl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Jörg Meibauer(2013), Hassrede - Von der Sprache zur Politik, in: Hassrede/Hate Speech - Interdisziplinäre Beiträge zu einer aktuellen Diskussion, Jörg Meibauer (Hg.), Gießener Elektronische Bibliothek.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박아란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Keyword>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음란, 불법정보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 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주목할 만한 조항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의무에 대해 신설이 제안된 제22조의5이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개정안 제104조 제3항 제1호의2).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22조의5가 유통을 방지하려는 불법정보란 무엇일까. 본 조항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법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로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한다. 즉 제22조의5는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조항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불법정보, 즉 명예훼손적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은 제22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넘쳐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

라인 음란동영상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개인 인터넷방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과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이하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가. 불법정보의 개념 및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의 입법 목적은 음란한 정보의 유통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란한 정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온라인 성인동영상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실은 음란물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음 판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음란물 판단의 어려움을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2004년 모 동영상콘텐츠제공업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야후와 동영상 제공계약을 맺고 각 포털업체의 VOD관에 성인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당 성인물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으므로 콘텐츠제공업체와 포털업체 측은 온라인 상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각 업체의 대표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었다.

동영상콘텐츠제공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등위의 음란성

판단은 최종적, 궁극적 판단은 아니며 음란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등위가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벌금 7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¹⁾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²⁾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³⁾ 음란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의 음란 개념인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 문란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나 묘사를 한 것이어야만 음란물이라고 판단기준을 더 구체화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볼 때 해당 동영상은 '저속'하고 '문란'하기는 하나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 표현물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또한 비디오물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 경우 오프라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온라인상의 음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다른 피고인이었던 포털사이트 대표 및 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599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무자에 대한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해당 동영상은 음란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포털업체가 ‘이 사건 영상물의 배포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벌금 8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⁴⁾ 그러나 콘텐츠제공업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포털 관련자를 상대로 한 항소심판결에서는 포털 대표와 실무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⁵⁾ 그 논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동영상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므로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문제가 된 동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므로 이를 유통한 포털사업자도 무죄라는 결론이었으며,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선 ‘음란물’을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수위의 성인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영등위와 법원의 판단이 달랐으며, 법원 내에서조차도 심급별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동영상을 음란물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2조의5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란물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성인물을 과다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일 뿐이지 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동영상까지 인터넷에서 삭제되어 성인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으며 영상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도 과다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고단1603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노1978 판결.



나. 다른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 목록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 외에도 제약회사, 마트, 영농법인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 상으로는 이러한 사업자들도 자신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재되었을 경우 이를 삭제 및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명한 외국 인터넷사업자들은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제22조의5는 국외 인터넷사업자는 규율대상으로 삼지 않는 반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음란물 차단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고 음란물을 삭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하루 수십만, 수백만 건씩 올라오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음란물을 삭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네이버, 야후 성인동영상 판례에서는 포털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와 성인물 제공계약을 맺었고 VOD관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러한 성인물을 제공했으므로 위법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유통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음란물의 유통을 ‘명백히 인식’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가. 아마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러한 음란물 발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전송을 방지 내지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청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판단이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검찰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 대표를 기소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 8월 직권으로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기타 관련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3. 맺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록⁶⁾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음란물 특히 ‘실시간 음란 인터넷방송’을 대상으로 한 심의가 있었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내보냈다가 적발된 인터넷업체대표와 속칭 ‘벗방’을 보여준 BJ(Broadcasting Jockey의 약어)가 출석하였다. 출석한 인터넷업체대표는 자신이 매개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60~70%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나, 자신은 음란 콘텐츠에 대해 경고 및 정지, 종료 등을 시도했으나 그 효과가 없는 것뿐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성인 콘텐츠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러한 인터넷업체의 자발적 규제나 모니터링의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2016. 6. 14.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가 신설되더라도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음란물 여부의 판단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법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온라인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 아동법, 성매매처벌법 등에 의해서도 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KISO JOURNAL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김윤명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법학박사

<Keyword>
셋다운제도, 등급분류, 게임할 권리, 문화향유권

1. 문제 제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게임 자체로 삶의 가치를 끌어내거나, 또는 게임을 즐기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디지털 게임은 놀이와는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통해 몰입(flow)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사고가 터지면 언론에서는 어떤 게임을 했는지를 찾는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게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연구도 부재하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콘텐츠, 또는 SW산업의 상당 부분을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게임SW가 갖는 산업적 가치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었다. 2014년도 기준이지만,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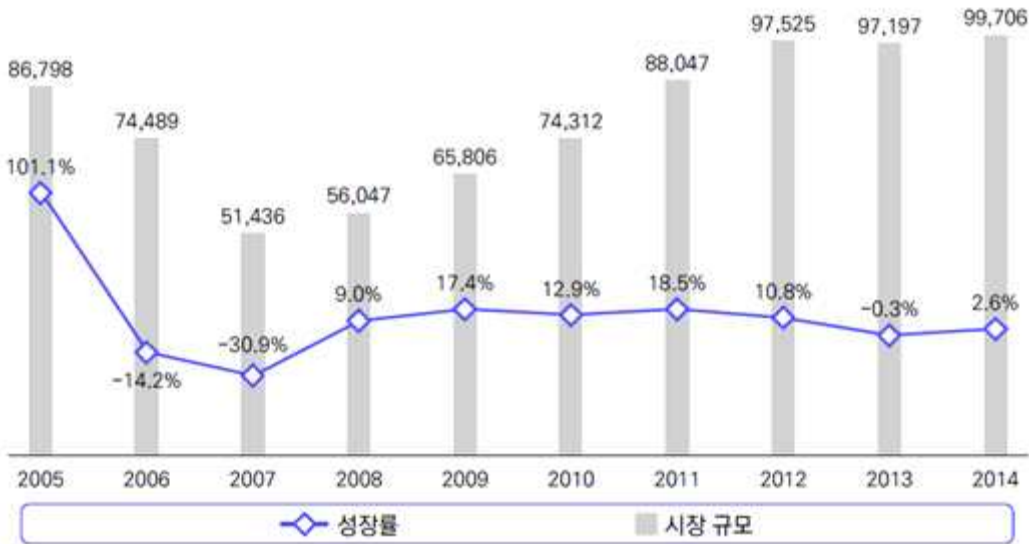
게임시장 100조 중 10조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3조에 이른다. 더욱이, 게임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여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용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8.7천여 명이 종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

그렇지만, [표]와 같이 2013년을 기점으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 성장이 멈추고 있다. 그동안 10% 이상 성장해오던 게임산업이 어느 순간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모습은 -0.3%의 성장이 아닌 -10%이상의 성장인 것이다. 그나마, 20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환경에 대해 당사자인 게임업계에서는 규제개선을 즐기치게 요청해오고 있다. 셋다운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반발은 사회적인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원죄 때문에 적극

1)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표] 국내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출처: 대한민국 게임백서(2015)

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게임규제는 게임인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규제는 산업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하나가 아닌 다수인 경우에는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게임산업을 들 수 있다.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이용제공시의 본인 및 연령확인, 청소년이용의 경우에는 강제적 섷다운제도 내지 선택적 섷다운제도, 중독물질 내지 중독행위로 규제를 하거나 하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특이한 점은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섷다운제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은 물론이거니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에서도 규정되어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임산업법에서 청소년보호법보다 규제범위가 넓을 수 있는 섷다운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2. 표현으로써 게임SW와 산업규제

가. 게임은 표현이다!

게임SW는 SW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가 혼재하는 종합예술이다. 다양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이 사용됨으로써 종합예술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문화예술법에서 게임SW를 하나의 예술장르로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 요소가 충분히 예술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예술로 보아도 충분하다. 더욱이, 게임SW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개발인력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표현물이다.

헌법 재판소는 게임물에 대해서 표현의 자

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²⁾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게임물도 표현예술로 보고 있다. 게임물은 표현예술의 대상이 되며, 표현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받는 객체이다.

표현의 주체인 개발자는 실제 기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게임물을 개발한다. 그래픽, 모션 방식, 장비, 게임내 운영방식, 규칙 등을 설정하여 밸런싱이 어우러진 게임물을 개발하여 이용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게임물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 게임물에는 개발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기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물도 다른 어떤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미있는 대상이 된다. 헌법 재판소도 게임물도 표현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³⁾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산업 규제

1) 등급분류와 검열의 경계

게임에서 검열이슈는 기본적으로 등급분류

와 관련이 있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전 등급분류는 게임 개발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 개발된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게임산업법에 위임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 만약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면 유통 자체가 금지되면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행 등급분류제도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잔존함은 부인할 수 없다.

2) 결제한도

게임물의 결제한도란 월간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한다. 게임물 결제 한도는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시에 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한도로 이해되나, 게임산업법이나 심의규정에서는 그 개념이 정의되어있지 않다. 결제한도는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정보기술서’에 월 이용한도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게임물 이외에 결제한도를 갖는 문화콘텐츠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영화, 뮤지컬 등 공연예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찾기 어렵다. 실제 뮤지컬이나 대형공연은 금액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게임이용과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⁴⁾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결제한도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초법적인 월 사용한도 제한은 게임을 제대로 된 문

2) 대법원 2004. 4. 13. 자 2001초472(2001도3495) 결정.

3) 헌재 2002. 2. 28. 99헌바117, 판례집 14-1, 118 [합헌].

4) 조인혜 외(2009). 『게임규제정책의 발전적 해법』. 서울: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32면.

화콘텐츠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 것”⁵⁾이다. 이제는 문화산업이자 문화예술로써 평가받는 게임물에 대한 규제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3) 섯다운제도

게임은 변하고 있다. 문화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듯, 게임이라는 문화현상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다. 논란은 게임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 섯다운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적 섯다운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소수 의견 중에는 “게임은 원래 오락적 요소와 운동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게임을 즐기는 행위는 개인적인 취미나 오락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 및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의 검색 및 공유, 의견의 교환, 상품 구매 및 결제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게임 종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4.24. 선고 2011헌마659 결정)는 것이다. 결국, 섯다운제도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문화국가 원리에 반한다.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를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문화향유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게임SW산업의 진흥

가. 생태계의 확보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별법에서는 다양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해당 법령이 갖는 특별법적 지위 때문이다. 우리 법체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만 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 규정은 진흥만이 아닌 규제도 포함된다. 따라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법령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규제에 대한 체계정합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규제에 대한 신설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를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특정 부처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쉽게 규제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게임물의 강제적 섯다운제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진행한 규제는 게임산업법이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게임이 진흥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나. 규제 일원화 내지 규제 정합성

중복규제는 그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으나,

5) 조인혜 외(2009). 『게임규제정책의 발전적 해법』. 서울: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32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된다. 따라서 규제의 일원화 내지 규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해당 규제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 웹툰을 예로 들면, 문화부에는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펴거나 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최근에 일어났던 웹툰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라는 형식으로 규제가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규제정책은 다양한 부처의 관여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 게임물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일한 규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규제는 해당 부처의 존립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즉, 존립목적에 따른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각각의 규제가 하나의 산업이나 대상과 결합되는 순간 수범자는 해당 규제를 수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을 청산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해외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을 검토해서 해당 정책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규제는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방법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등록하고 관리하겠지만, 이는 규제의 근거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에 집중된 것이 산업이나 수범자에 대한 규제영향력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4. 자율규제와 시사점

가. 자율등급분류제도

자율등급분류제도의 의의는 등급분류제도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유통되는 게임물의 적정 등급을 확인하여, 게이머에게 해당 게임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사전적 내용규제가 아닌 사후적으로 게임의 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행 등급분류제도가 국가에 의한 사전강제주의라고 한다면, 자율등급분류제도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등급분류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확률형아이템의 규제 논의

최근 모바일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되고있다. 실제 모바일 게임물에서는 결제 한도 등을 체크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온라인게임에서의 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이용금액이 결제되도록 하고있다는 점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갖는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게임내 이용자의 부작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결제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는 확률 자체가 갖는 속성으로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게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의 목적상품을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의 성격을 잘 프레임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칫, 청소년 보호라는 명제를 넘어서 사행성 이슈와 같이 게임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의 개별적 요소는 서로 견련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게임내의 요소와 게임외적인 요소인 게임아이템은 게임사가 강조하는 게임성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게임성을 우선한다는 게임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면도 발견된다. 결국,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다. 모바일 게임물의 섯다운 가능성

모바일 게임물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시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유보되었다. 격년으로 평가하여, 중독성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모바일 게임물의 중독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객관적인 지표와 질문지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온라인게임물의 점유율이 80%를 육박하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물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모바일 게임물의 섯다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중독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물도 섯다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게임은 오락실에 있다가 가정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오락이자 취미로 변모하고 있다.⁶⁾ 규제는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존속된다. 산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거나 국가통치자가 규제 완화를 지시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물론 문화국가 원리에 반하는 섯다운제는 재론의 여지없이 폐지되는 것이 산업 정책을 넘어선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방향이다.⁷⁾ KISO JOURNAL

6) 김윤명(2015). 『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0면.

7) 김윤명(2015). 『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93면.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염홍열 /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Keyword>

정부 3.0, 비식별화, 재식별화,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정부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 정부 3.0 및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글로벌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한 수단이 개인정보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기법이다.²⁾ 비식별화는 특정 정보 주체와 식별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비식별화

기법은 정보가 특정 정보주체와 연관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집합을 변화하는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³⁾

본 고에서는 주요국의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표준,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2. 주요국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1) 미국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2015년 10월 비식별화 기법에 대한 표준을 발표했다.⁴⁾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3.0, available. <http://www.gov30.go.kr/Intro/Intro.jsp>

2) 정부부처 합동(국무조정실,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3) NISTIR 8053,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015.10.

4) NISTIR 8053, 상동

- 데이터 비식별화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비식별화는 하나의 기법이 아니라 여러 다른 방법, 툴,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라고 간주되었다. 비식별화는 특정 정보 주체와 식별 데이터 집합간의 연계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지칭한다.
- 데이터는 특정 정보주체와 연관되는 데이터(식별 데이터), 데이터가 여러 정보주체와 익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k-익명 데이터), 그리고 특정 정보주체와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익명데이터) 로 구분하고 있다.
- 비식별화 데이터 처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비식별화 데이터는 계약에 의해 이용되거나 제삼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 비식별화 기법은 직접 식별자(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의 삭제, 가명화, 유사 식별자를 제거하기 위한 삭제, 일반화, 교체, 순서 변경, 샘플링 등의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 등 비식별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영국

영국 정보감독청(ICO)은 2012년 11월 익명화(anonymisation) 지침을 발표했다.⁵⁾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화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익명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침은 개인정보의 익명화를 통해 기업의 빅데이터 처리 요구를 지원하며, 개인정보

를 익명화하기 위한 기업을 지원하며, 효과적인 익명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있다.

- 익명화는 데이터를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거나 식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 지침에서는 데이터 마스킹, 가명화, 총계 처리 등의 익명화 기법이 소개되고 있다.
- 재식별화(re-identification) 위험이 없도록 효과적인 익명화를 보장해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서로 다른 익명화 정도는 서로 다른 비식별화 위험에 비례한다. 익명화된 데이터의 제한된 접근은 더 풍부한 데이터의 공개를 허용한다.
- 조직은 익명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한다. 조직의 경영진은 이 거버넌스 준비를 감독해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익명화는 비식별화와 동의어로 간주된다.

3) EU GDPR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내에서 개인 정보보호 규제를 통일화 하고 유럽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채택했다.⁶⁾ 이 법제는 2018년 5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5) ICO (UK),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 code of practice,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November 2012.11.

6)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4

- 비식별화와 연관되는 가명화에 관한 조항을 도입했다. 가명화는 추가적 정보의 이용 없이 특정 정보주체에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을 지칭한다.
- 가명화 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가명화 된 정보는 별도로 비밀스럽게 보관되어야 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가명화 기법은 데이터가 수집 당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거나, 개인정보보호 내재화 원칙을 만족하기 위해 하나의 기법으로 이용되거나, 의료, 과학, 연구, 통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호주

호주 정부는 2014년 4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지침을 발표했다.⁷⁾ 호주의 정보 공개법(1982)에서는 정부 정보가 국가의 자산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정보 자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프라이버시법(1988)의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식별화는 정보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식별화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프로세스로 간주했다. 비식별화는

개인 식별자(이름, 주소 등)를 제거하고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보(개인특정이 가능한 드문 속성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 조직은 재식별화 될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정보자산을 비식별화하기 전과 비식별화 데이터가 공개되고 나서 수행되어야 한다.
- 비식별화 목적은 연구 목적으로 공공 참여, 정책 개발과 기획을 알리고, 민간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모든 집합을 알지 않아도 되거나, 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유되어야 하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비식별화는 수행된다.
- 비식별화 정도는 비식별화 되어 있는 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의 유형, 정보 자산에 접근하는 주체와 목적, 정보 자산이 유사 식별자를 포함하는지, 재식별화를 위해 다른 정보가 가용한지, 재식별화 되어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보를 고려해 결정된다.
- 비식별화 기법은 유사 식별자 제거(중요일자, 직업 등), 범주화, 총계처리, 정보 교환, 데이터 삭제 등이다.
- 사후 조치로 수탁기관이 정보를 재식별화를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하거나, 비식별화 정보자산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식별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5) 비식별화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7) Australian government(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De-identification of data and information, 2014.4.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2015년 4월 회의에서 프라이버시 보존을 위한 비식별화 기법 (ISO/IEC 20889) 신규워크아이템이 제안되어 2015년 10월 신규워크아이템 제안투표를 통과해 현재 개발되고 있다. 이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 데이터 속성의 정의, 재식별화 위험, 비식별화 목적, 비식별화 기법의 선택, 비식별화 데이터의 접근 제한과 재식별화의 통제 등의 조직적 보호조치, 통계적 수단,

암호학적 수단, 삭제 기법, 가명 기법, 일반 기법, 난수화 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해, k-익명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비식별화 기법을 기술하고, 공통의 용어와 비식별화 기법의 종류와 유형을 기술하고 있다.

2016년 9월 ITU-T SG17 회의에서는 비식별화 처리 서비스의 개요, 프레임워크, 관리 요구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신규 워크아이템을

[표 1] 주요국의 비식별화 지침 특성비교

	영국	호주	미국
명칭	익명화: 데이터 보호 위험 관리 지침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발행 기관	영국 독립 정보감독청 (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호주 독립 정보감독청 (OAIC,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발행 시기	2012년 11월	2014년 4월	2015년 10월
개인정보 정의	자체로 식별되는 개인 또는 개인정보처리가 입수 가능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식별된 개인 또는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식별되는 개인과 식별 가능한 개인과 연관되는 정보
용어	익명화(Anonymisation)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비식별화 처리 원칙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해서 유럽 데이터 보호 원칙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식별정보 삭제 ▪ 독특한 정보와 결합이나 특징으로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삭제 또는 변경 	정보주체와 데이터셋 연관성 제거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기획팀, “美 NIST,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공개” 참조

8) ISO/IEC 2nd WD 20889,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chniques, 2016.09.

합의했다.⁹⁾ 이 표준은 이제 표준의 범위만을 합의했으나, 의도는 여러 기관에서 처리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더 큰 비식별화 데이터 집합을 만들기 위한 비식별화 처리 서비스를 규정할 예정이다.

3. 정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1) 주요 내용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2016년 6월 30일 발표했다.¹⁰⁾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유관 정부부처가 모두 모여서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고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의미가 있다.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적정하게 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엄격히 해석해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입수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 비식별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4호에 근거하고 있다.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 비식별화 단계는 4단계 (사전검토단계, 비식별화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 단계) 로 구성된다. 사전 검토 단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비식별화 조치는 정보 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적정성 평가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는 단계이다. 사후 단계는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한다.
- 적정성 평가 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중 k-익명성을 활용한다. k-익명성은 최소한의 평가수단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평가모델(*l*-다양성, *t*-근접성) 활용한다.
- 각 소관부처 책임 하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분야별 전문기관의 역할은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9) ITU-T X.fdis "Framework of de-identification processing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2016.09.
 10) 정부부처 합동(국무조정실,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단 풀(비식별 조치 기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구성·운영한다. 산업별로 필수적인 비식별 조치 이행 권고(k-익명성 조치 등)했다. 또한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등이다.

-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 집합물 결합 지원하도록 했다.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식별자가 매칭키로 사용 정보 집합물 간 결합·분석을 위해서는 결합 과정에서만 임시로 매칭키 역할을 하는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다.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제3의 공공기관)에서만 결합을 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제공한다.

-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재식별하고도 즉시 파기 조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가이드라인 평가 및 향후 과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타협안으로 간주된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비식별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비식별화 전문기관 요건과 비식별화 데이터의 정의, 비식별화 데이터 안전성 등의 법적 근거 공고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비식별화 관련 기술과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표준화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면 국제 표준에 근거한 체계, 기술과 프로세스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ISO JOURNAL

구글 국내지도 국외반출 요청 이슈와 정책 시사점

채반석 / 블로터앤미디어 기자

<Keyword>

BEPS, 갈라파고스, 구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국토지리정보원, 안보, 위성사진, 지리정보사업, 포켓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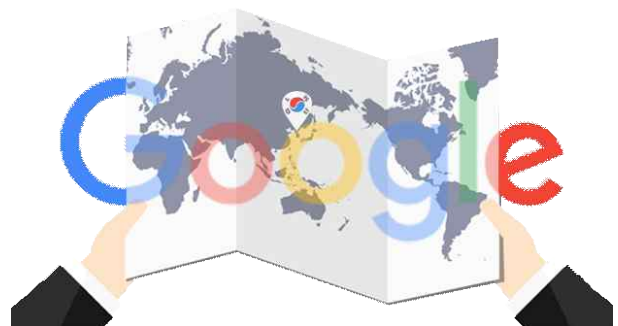
구글 지도 반출 이슈는 지난 6월 1일에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공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지도 반출 신청의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기본적으로는 반출을 금지하지만,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7개 부처가 함께하는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협의한 후 통과하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의 구성원들은 1.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3.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반출 신청 지도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1:5000의 지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이 가공 및 수정한 데이터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 데이

터에서 주요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수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반출 목적으로 GIS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국내 관광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국내 소비자의 편익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꾸준히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청해왔지만, 이번에도 반출 신청은 ‘보류’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판단을 11월로 미뤘다. 처리가 쉽지 않은 문제인 까닭이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는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세금, 국내산업과의 충돌, 마지막으로 지도 표기다.



■ 안보 : 위성사진을 지워라 vs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이 없다

그간 정부가 반출을 거부한 사유는 ‘안보’다.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에서 국내 안보시설을 흐리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지도에는 안보시설까지 찍혀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에는 민감한 정보가 지워져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청와대 등 민감한 시설의 위치가 구체화 될 수 있다. 정부가 위성사진에서 안보 등 민감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구글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위성사진 서비스와 지도 반출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내를 대상으로는 안보시설을 흐리게 처리하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인데 한 국가가 요청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두 번째 주장은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박한다. 이미 디지털 글로브, 지오아이 등 세계적인 위성사업자와 지도 재판매 업체들이 오랫동안 위성사진을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도 데이터와 위성사진 결합’ 역시 추가적인 안보 위협을 낳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글 서비스로 결합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결합하면 안보시설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러시아의 얀덱스 맵이나, 네이버 혹은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정밀지도도 해외에서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서비스를 결합하기도 쉽다. 구글이 지도를 가지고 나간다고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구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안보 시설을 흐리게 처리한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위성사진 제작 단계에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이미 만들어진 위성사진을 구매해 서비스에 활용하는 서비스 업체에게 지워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 세금 : 데이터 센터 설치하라 vs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용한다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구축해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구글은 데이터 센터가 국내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세금 문제가 직접적으로 엮여 있지는 않다. 구글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지 데이터센터 설립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가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을 허락해서 생기는 손익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도 데이터 반출이 걸린다. 구글 지도를 서비스하고 싶거든 서버를 두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물론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정해진다”라고 설명하고 “그래도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야 하는 것은 똑

같다”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은 구글이 다른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것에 있다. 일단 다른 국내 기업과 똑같이 통제를 받고 세금을 내는 것부터 하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일관되게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IT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조세 회피’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방법이지 불법은 아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조세 형평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MS만 떠올리지만, 삼성전자도 거대 글로벌 기업이다. 구글에서 세금을 더 걷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타국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을 겨냥하는 법인세 개정이 미적지근했던 이유기도하다.

다만, 최근 주요 20개국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소위 ‘구글세’를 걷는 데 각국 정부가 동의하고 법·제도 정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방안’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조세문제가 해결된다면, 적어도 세금 측면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 **국내산업과의 충돌 : 보호가 필요하다 vs 갈라파고스화 우려된다**

세금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네이

버 등 국내 업체는 억울하다고 말한다.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규제받아가며 사업을 하는데, 구글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사업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다. 역차별 주장이 나온다.

또한, 국내 업체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다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글은 ‘갈라파고스화’를 주장하며 혁신과 경쟁을 이야기한다. 자꾸 보호만 하려고 하면 소위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나갈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도 안 된다는 말이다. 또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허락해야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소위 ‘포켓몬 고’ 같은 위치 정보 기반 사업의 가능성을 말한다. 구글은 에어비앤비, 우버 등 지금은 커다란 규모로 성장한 스타트업도 구글 지도를 활용했거나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지명 표기 문제 : 동해-독도 표기해야 vs 글로벌 표준 따른다**

지명 표기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지점이다. 동해-독도 표기 관련이다. 한국에서는 동해-독도로 보이지만, 일본판에서는 일본해-다케시마로 표기돼 있으며, 글로벌 버전에서는 일본해(동해)-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칙을 따라간다고 설명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다. KISO JOURNAL

평화로운 기술 : 미담 그리고 미화

김예란 /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Keyword〉
기술, 사회, 인간의 내면, 시민성

제 목	기술 중독 사회 (원제: Geek Heresy)		
저 자	켄타로 토야마	역 자	전성민
출판사	유아이북스	출간일	2016년 5월 20일

켄타로 토야마의 〈기술 중독 사회〉는 기술의 결과가 하나의 방향으로 - 흔히 기대하듯이 인간 문명을 진보로 이끄는 식으로 -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 쓰임새 안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효과들을 창출하게 되는 현상에 관해, 그 원인과 효과를 폭넓게 아우르며 진지하게 탐구한다. 토야마는 기술이 이질적인 징후와 효과로 나타나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기술이 보다 좋은 방식으로 사용되어 인간의 복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회적 실천 방안들을 처방한다. 이런 점에서 켄타로 토야마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유쾌한 휴머니스트 기술주의자다.

토야마는 주로 오늘날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서 몸소 행한 현지조사 및 연구와 교육 경험을 풍부하게 살려 기술적 특수성의 사회적 현실과 의미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하나의 기술이 한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일군 사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여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자극이 되지 못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례들이 풍부하게 소개된다. 또한 작게는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대학 교육과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미시 차원과 거시 차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균형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되어 바람직한 인간

과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기술 패키지 활용을 위한 세 가지 규칙으로 “첫째, 목표와 연계된 사람의 영향력을 확인하라, 둘째, 사람의 올바른 영향력을 위해 패키지 개입을 사용하라, 셋째, 패키지 개입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피하라”가 조목조목 제시된다. 기술만능주의가 대세인 오늘날, 우리는 토야마의 모험과 탐색을 숨 가쁘게 쫓아다니면서 그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기대, 단순한 접근방식을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기술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을 질문하게 된다.

우리가 기술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토야마의 답안은 명쾌하다. 그는 기술사용 주체인 인간, 특히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근본에 둔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품성이나 역량으로, 개인의 ‘좋은 의도, 안목, 자기통제’를 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제공된다고 해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별할 판단력과 지성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마음속에 품게 된 이러저러한 가치들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려는 굳은 결심과 실행력이 없다면 그 어떤 기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토야마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은 기술 그 자체나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기업에게 있지 않다. 그 결정력의 많은 부분은 기술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다. 토야마가 표준화된 특정 기술을 획일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주입하는 패키지 개입 방식이나, 합리

성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공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야마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내면을 성숙시켜 자아를 초월하려는 주체의 투지, 그리고 그러한 내면적 힘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지하는 교육 활동에 있다. 아울러 개인과 교육기관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기술 활용에 있어선 사회 전반의 노력과 실천이 결합되어 동반되어야 하므로, 기술을 통한 인재 양성이란 오랜 시간, 강한 노력,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처럼 당찬 기획에 기꺼이 투신하려는 올곧은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각자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용기와 적극성을 발휘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 같은 토야마의 주장에 반대할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토야마에게 인간이란 그 동기가 올바르게 발동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다면 선한 의지와 바른 생각을 길러서 자신을 고양하는 인간, 또한 내면적 성숙이 무르익으면 타인에게까지 자신이 성취한 결실의 이로움을 전하고 나누려는 이타주의적 존재다. 개인의 미덕과 선행은 마치 민들레의 씨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세상이 차차 개선되고 향상되리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토야마가 제안하는 아름다운 그림에 우리는 감동과 희망을 품게 된다. 또한 인도 등지에서 실제 경험된 성공 사례들은 우리의 낙관적인 전망에 더욱 큰 믿음과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럼에도 〈기술 중독 사회〉를 읽고 나면 희망에 가득 차서 하늘로 비상하다가 어느 순간 허공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공허함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나는 토야마의 희망찬 전망이 기술에 대한 미답일지 미화일

지 자문해 보았다. 물론 미담과 미화의 경계는 실상 그리 뚜렷하지 않다. 미담의 사례들을 뽑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낙관적인 전망이 되지만 때로는 미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토야마가 희망하는 평화로운 기술사회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미담을 믿고 실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토야마는 기술사용의 주체를 개인으로 본다. 실패도 성공도 개인의 심리적인 속성, 성품,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적 모순과 정치 갈등을 기필코 극복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에 대한 자유주의적 인식은 자칫 사회와 개인이 때로는 마찰적으로 복잡하게 연관된 사회적 현실을 잊게 만든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일류 대학에 입학하며 고백했다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말로 대변되곤 하는 성공담에서도 종종 발견되듯이, 이러한 견해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묶여있는 사회적 상황,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엄마저 박탈하는 부당한 권력 작용과 불평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또한 개인의 생각과 의지가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데에 결정력까지는 아닐 지라도 중대한 조건력을 가하는 사회적 요인과 작용들은 간과된다. 토야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대신 각자에게 영웅이 되어 탈출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기술 중독 사회〉에서는 물질·정신적 자원과 능력을 제공하는 자(타야마의 분류에 따르면 ‘멘토’에 해당한다)와 수혜자(이것

역시 ‘멘티’로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이에 고착화된 위계질서를 묵과한다. 그가 ‘유출’이 아니라 ‘순환’이라고 강조하는 지식과 기술의 국제적 흐름은,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흘러내리는 일방성과 잘 되어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기술제국주의같이 과거의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들이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토야마가 묘사한 사례는 거의 전부가 서방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창안하고 확장한 기술 패키지와 창조계급에 관한 내용들이다. 토야마의 주된 관심사는 이 원천기술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 중심의 IT 산업이 지구화 체제로 확장·강화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예를 들어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쇠퇴, 미국 중심적인 정보 및 지식 질서 확장, 각 국가와 사회의 자생적 지식 및 기술 발전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자본주의의 지구적 체제화 등에 관한 비판적 탐구는 시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켄타로 토야마가 기뻐 마지않는 성공담들의 주인공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빈민가 출신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은 바탕 위에서 적정한 기술을 제공받음으로써 능력의 ‘증폭’ 효과를 누리고 신분이나 계급 이동에 성공한다는 줄거리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거의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밀착해 있다. 물론 IT 업계에서 성공하여 큰돈을 벌었지만 이러한 경제적 보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의 교육 장학 활동 등도 멋지게 소개된다. 이들은 단지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자아실현 및 사회적 공

헌을 추구하는 태도로 칭송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미’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성공 모델이다. 그 특권적인 위치에서 도덕적인 희열까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지구상의 극소수의 인간 집단들이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원과 분위기에서 배양된 젊은이들의 삶과 세계관이다. 토야마는 ‘성공’의 의미를 사회적 명예 및 경제적 부의 개인적 획득에 두고 있다. 반면 해당 사회, 즉 대부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국지전이 난무하고 인종 및 종교 갈등이 심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국가들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성공을 거둔 젊은이들 각자의 삶은 분명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다. 반면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치공동체와 시민의 정치참여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답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평화로운 기술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선 우선 개인주의 모델을 벗어나 단일국가 혹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집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시민성의 성장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부연처럼 실용적인 관점에서 몇 개 지적을 하자면, 이 책의 번역서 제목인 〈기술 중독 사회〉는 원저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원제는 ‘Geek Heresy’로, 직역하자면 ‘기술의 이

단’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 원제의 의도는 아마도 기술이 우리에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모든 성공을 가져다주리라고 믿는 기술중심론과는 다른 시각에서 기술의 사회적 실천 방법에 대해 논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이 책은 기술 중독에 대해 단순기술하거나 체념하는 책이 아니라 반대로 기술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서이며 기술의 이단이 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실천서다. 또한 참고문헌이 누락되어 있다. 원저자가 주석에 풍성하게 소개한 서지사항이 무용해진 점이 적잖이 아쉽다. KISO JOURNAL



공정거래위원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간담회 개최



2016년 9월 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및 회원사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과 네이버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상의 각종 부당 광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ISO는 온라인 광고 심의 활동,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 운영 등 온라인 광고 자율 규제 현황을 발표했으며,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자율 규약 개정 계획도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자율 규약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심사 요청 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KISO와 회원사는 신유형 광고 자율 심의 확대와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와 유관 단체 간 교류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KISO를 중심으로 건전한 온라인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KISO JOURNAL

<KISO저널 제24호>

발행일 2016.9.30.

발행인 임지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신원디마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
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24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9.5207)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효섭 부장(네이버 경영지원실)

양현서 파트장(카카오 대외협력실)

이원태 박사(KISDI ICT전략연구실)

허정일 부장(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협력실)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편집간사/이시은 연구원(KISO 기획협력실)



ISSN 2287-8866(Online)